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2. 9 선고 2022가단379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혜련, 윤영은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540,592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40,5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4. 19.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F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38.9%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나. E 주식회사는 D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G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G 주식회사는 D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15. “7,111,458원 및 그 중 4,730,001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10728).

다. 원고는 2021. 1. 22. G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G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22. 7. 5. 위 채권양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명하는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카기172)이 이루어져 채권양도통지서가 공시송달되었다.

라. 망 H은 2020. 12.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I, D, J 및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1. 3.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사. 원고의 D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 원리금은 2023. 1. 4. 현재 12,540,592원(= 원금 4,730,001원 + 이자 7,810,591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H이 사망함에 따라 D는 그 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D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D는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사실도 없다. 이처럼 원고는 대출금반환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보낸 채권양도양수통지서가 미배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D가 E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채권을 양수한 G 주식회사가 D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G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반환채권에 기초한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통지서를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그 가액배상의 산정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후인 2021.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80,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1. 4.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2,540,59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 434,996,800원(토지 992,000원 × 350.4㎡, 건물 87,400,000원)이고, 여기에서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을 공제한 가액 중 D의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56,665,955원[= (434,996,800원 - 180,000,000원) × 2/9]으로 산정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위 12,540,5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위 12,540,5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만

별지